

춘천지방법원 2015. 10. 7 선고 2014가단784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15. 9. 9.

판결 선고2015. 10. 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, D은

(1) 별지 도면 표시 2, 3, 4, 5, 6, 14, 15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빔 철재 건물 175㎡ 및 별지 도면 표시 7, 18, 13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빔 철재 건물 20㎡'를 각 철거하고,

(2) 위 토지를 각 인도하고,

나. 피고 B은 제1의 가.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,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, 을가 제1호증, 을가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략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.

가. E은 1996. 1. 26. 춘천시 F 목장용지 4,134㎡(도로명 주소 : 춘천시 G)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, 1996. 2. 3. H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그 후 원고는 2002. 5. 24.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, 2003. 5. 30. I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J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4. 12. 1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K은 1963. 3. 26. 춘천시 L 전 44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2011. 10. 6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일부분이 건축되어 있는바, 별지 도면 표시 2, 3, 4, 5, 6, 14, 15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빔 철재 건물 175㎡ 및 별지 도면 표시 7, 18, 13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빔 철재 건물 20㎡이다(이하 선내 (나) 부분 및 (다) 부분을 '이 사건 철거 목적 건물'이라 한다).

라.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철거 목적 건물에서 양계업을 하고 있다.

마. J은 2011. 3. 15. 사망하였고, 피고 C, D이 상속하였다.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, 원고에게, ①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C, D은 이 사건

철거 목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, ② 피고 B은 이 사건 철거 목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, D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위 피고들은, ①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철거의무가 소멸하였고,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매도한 후,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철거 목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한정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

을가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, 위 피고들이 2014. 12. 15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느단49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. 12. 19.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피고들의 책임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기는 하나, 이 사건 건물은 위 피고들이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, 위 피고들의 철거의무는 위 피고들의 책임이므로, 상속한정승인이 되었다 하여, 그 철거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.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2002. 5. 24.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, 2003. 5. 30.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 원고가 2011. 10. 6.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K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철거 목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므로,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조우연

별지